

법	시 행 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12조의2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	제4조의4(손실보상의 대상)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“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<u>1.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</u> <u>2.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</u> 제4조의5(손실보상의 신청 등)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,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 제4조의6(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·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다.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손실보상의 기준,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.	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 제4조의7(손실보상금의 환수)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.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1. 환수사유 2. 환수금액 3. 납부기한 4.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12조의3(이의신청)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4조의8(이의신청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제4조의9(이의신청 기간) ① 법제12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90일을 말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어려운 경우,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	
제12조의4(손실보상 심의위원회)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	제4조의10(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.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중소기업부차관이 된다.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3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 전단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,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.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·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.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.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	또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 제4조의11(위촉직위원의 해촉) 중소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.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급 또는 중감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,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12조의5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, 법인·단체·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1. 대표자의 성명,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 2. 사업자등록번호, 매출액, 개업일, 폐업일,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	제4조의12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과세 정보(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)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.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.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1항 후단 및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, 내용,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3.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	2.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.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,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.	

법	시 행 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12조의6(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·처리 2.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.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4조의13(전담조직의 구성)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) (현행 제12조의3과 같음) 제2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제29조(벌칙)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	

법	시 행 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	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,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.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·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.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.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.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, 내용,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.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.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.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여부, 내용,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. 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 5의3.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.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6. (현행과 같음)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·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1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.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관련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,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.	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4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조치부터 적용한다. ■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[별표2] <u>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</u>(제4조의8 관련) -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과세·환급 자료 -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 -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사항 및 기간에 관한 자료 - 법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	

법	시행령(중기부안)	전문가 자문
	항제2호에 따른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	